

「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」
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「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」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「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」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: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(추진근거)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
- 「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제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○ (필요성)

-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밴)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업무의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요하여 민간위탁 추진으로 운영의 효율성, 전문성 확보

다. 위탁개요

- 1) 위탁사무 :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
 -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(임산부택시 포함)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접수, 자격심사 및 확인
 -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
 -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및 수입금 관리
 - 이동지원센터 직원 및 운전원 채용, 교육 및 근로감독
 -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
- 2) 위탁시설 : 특별교통수단 29대(휠체어 슬로프 장착 차량)
 - 카니발 29대

<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>

- ◇ 수탁기관 : (사)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(총괄부장1, 사무원2, 운전원26)
- ◇ 이용대상 :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장애인,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,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
- ◇ 이용요금 : (관내) 기본 1,100원/5km, 최대요금 3,000원
(관외) 기본 1,100원/5km, 최대요금 시외버스 요금 2배 이하
- ◇ 이용방법 : 즉시콜 및 예약콜(3일전) 병행
- ◇ 이용지역 : 관내 또는 경북·대구, 김천KTX역(병원진료 목적)
- ◇ 이용차량 : 특별교통수단 25대(2025년 하반기 4대 증차 예정)

라. 위탁기간 : 2026년 4월 ~ 2029년 3월(3년)

마. 소요예산 : 2,137백만원 * 2026년 기준

[단위 : 백만원]

계	인건비	운영비 등
2,137	1,701	436

※ 2026년 위탁비 기준(대당 연 74백만원 정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,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2025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3. 부서 의견

가.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확보 및 공급 확대가 가능한 위탁업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
- (2) 「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제9조
- (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관계법령

□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~⑦ 생략

⑧ 국가 또는 도(道)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⑩ 시장,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

제9조(특별교통수단 등의 위탁)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
2. 이동지원센터의 운영
3.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다만, 시장이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

제5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관리,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3년간 추산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6)	2차년도 (2027)	3차년도 (2028)	합계
세입	○ 이용료	110,000	120,000	130,000	360,000
	소계(a)	110,000	120,000	130,000	360,000
세출	○ 인건비	1,701,453	1,701,453	1,701,453	5,104,359
	○ 운영비	433,747	433,747	433,747	1,301,241
	○ 시설비	1,800	1,800	1,800	5,400
	소계(b)	2,137,000	2,137,000	2,137,000	6,411,000
□ 총 비용(a-b)		-2,027,000	-2,017,000	-2,007,000	-6,051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국 비	270,000	270,000	270,000	810,000
도 비	81,000	81,000	81,000	243,000
시 비	1,786,000	1,786,000	1,786,000	5,358,000
민 간	-	-	-	-
기 타	-	-	-	-
합 계	2,137,000	2,137,000	2,137,000	6,411,000

5. 부대의견

국·도비 보조 및 자체수입(지방세)으로 재원을 조달하여, 특별교통 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혈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

6. 작 성 자 :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정책팀 김소희(480-290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연간 운영 소요예산(안)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산액	비고	
합 계		2,137,000		
사 업 비	인건비	소 계	1,701,467	
		보 수	966,836	기본급
		제수당	380,475	
		복리후생비	116,400	
		사회보험부담금	121,860	4대보험
		퇴직금	115,896	
	운영비 등	소계	435,533	
		공공요금	25,948	
		제세공과금	38,018	
		임차료	35,172	
		차량유지비	256,467	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바우처택시 단말기 유지보수
		일반운영비	78,128	
		자산취득비	1,800	

소 관 부 서		대중교통과
입 안 자	과 장	임 춘 옥
	팀 장	조 성 현
	담 당 자	김 소 희 (480-2902)